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8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신설 (김상훈의원안)	2

I. 개요

1.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8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신설 (김상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8 신설)</u> ○ 공제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 적용기한: 2029.12.31. ○ 시행일: 2025.1.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

* 김상훈의원안 2024. 9. 12. 발의(의안번호 3989)

- ☐ 개정안은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으로서 축산시설, 도축시설, 수산물 가공시설, 식품제조시설,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이 포함됨.¹⁾

동 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악취방지계획 수립 의무 등이 부여됨.²⁾

또한, 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2024년 4월 말 기준 악취관리지역은 12개시도 5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1)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국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2024년 4월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1	울산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20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2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3			2009-09-0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산405-3	
4		2014-02-0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11개필지)		
5	경기	평택시	2005-05-16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6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시
7		안산시		안산시	
8				반월국가산업단지	
9		오산시	2011-01-10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0		화성시	2016-12-05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11		평택시	2018-02-13	발안산업단지	
12		평택시	2023-08-23	평택일반산업단지(세교)	
13		용인시	2018-06-04	독곡동 일원 4필지(축사2개소)	
14	충남	서산시	2006-1-20 (2020-7-6통합)	포곡읍 신원리, 유운리 일원(축사 47, 레스피아)	
15		당진시	2010-11-30	대산공업단지(3곳) - 대산일반산업단지 - 대산3일반산업단지 - 대죽일반산업단지 -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 대죽자원비축국가산업단지 -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 씨지앤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 - 독곶리 1 외 - 대죽리 10-1 외	
16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17		보령시	2024-03-26	송산일반산업단지	
18	인천	남동구	2006-01-24	연지리 342-8 외 11필지, 연지리 342-4 외 1필지, 연지리 348 외 4필지	
19		서구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동·고잔동 지역	
20				서부지방산업단지	
21				가좌동·석남동·원창동 지역	
22		동구	2012-10-02	백석·오류동 일원	
23			2011-12-13	검단일반산업단지	
24		2012-10-02	화수동 일원		
25		부평구	2015-08-24	송현동 일원	
26		중구	2016-12-12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27		미추홀구	2018-11-05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	
28			2018-11-05	인천지방산업단지(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29	부산	사하구	2018-11-05	인천기계산업단지(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2006-04-26	부산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30	전북	완주군	20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31		익산시	2014-01-24	익산제1산업단지
32				익산제2산업단지
33	대전	대덕구	2008-01-01	대전 1,2산업단지 등
34				대전 3,4산업단지 등
35	강원	영월군	2008-04-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7개 필지)
36		원주시	2024-04-09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37		철원군	2024-04-09	철원군 동송읍 오지1리 및 장흥리 일원
38	경북	의성군	2008-12-0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39		경주시	2022-05-12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40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40	경남	창원시	2013-07-01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41		김해시	2020-02-17	주촌면 선지리 214 외 26필지
42				주촌면 원지리 116 외 39필지
43			2020-10-13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부
44			2021-07-09	진영·본산리준공업지역
45		함안군	2021-01-01	철서일반산업단지
46			2023-05-08	함안면 괴산리 673번지 외 57필지(양돈시설 11개소)
47	전남	여수시	20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48		여수시	2019-05-02	여수국가산업단지
49		여수시	2019-05-02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50	제주	제주시	2018-03-23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노형동 등(축사 53)
51		서귀포시	2018-03-23	대정읍, 남원읍, 중문동 등(축사 6)
52		서귀포시	2019-07-19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지역 44개 악취배출시설(양돈 축산시설)

자료: 환경부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개정안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정주요건 조성에 기여하고 악취관련 사업장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어,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회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음.

전국적으로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연 평균 38,640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해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국 악취민원 발생현황]

(단위: 건)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전국	40,854	39,902	39,397	33,592	39,457	38,640
서울	1,097	1,160	1,246	1,441	2,040	1,397
부산	2,194	1,817	1,818	1,255	1,432	1,703
대구	1,129	1,182	1,411	700	1,973	1,279
인천	5,191	2,900	2,172	1,850	1,856	2,794
광주	477	446	530	367	830	530
대전	1,595	1,404	670	814	1,295	1,156
울산	805	725	702	685	763	736
세종	103	145	116	167	347	176
경기	7,708	7,775	9,620	6,413	6,418	7,587
강원	710	791	972	1,025	972	894
충북	1,381	1,386	1,337	1,409	1,490	1,401
충남	2,543	2,962	5,373	3,399	4,737	3,803
전북	1,974	1,832	2,272	2,471	3,895	2,489
전남	1,970	2,285	1,852	1,717	2,051	1,975
경북	2,674	3,136	2,039	2,693	2,704	2,649
경남	7,370	8,421	5,295	5,495	4,568	6,230
제주	1,933	1,535	1,972	1,691	2,086	1,843

자료: 환경부

둘째, 악취방지를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효과가 있음.

「악취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영세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참고로,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다만,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법 제24조)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에 대해 10% 공제율(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1%)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임.

동 제도의 대상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등이 아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포함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적용대상이 되는 환경보전시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로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포함시키고 있음.⁴⁾

3) 「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55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